## Legal Update | 리츠·펀드 2024.11.7.

# 프로젝트리츠 제도의 개요 및 특징

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(이하 "**프로젝트리츠**")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법(이하 "부투법")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안)(이하 "개정안")이 발의되었습니다.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프로젝트리츠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, 조세특례제한법상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(이하 "PFV")와의 비교를 통해 프로젝트리츠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#### 1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#### 1. 프로젝트리츠 제도의 기본 구조와 취지

현행 부투법에서도 부동산투자회사(이하 "리츠")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 리츠는 영업인가(등록 을 포함하며, 이하 같습니다)를 받은 후에 개발사업을 해야 합니다(부투법 제9조 제1항, 제9조의2 제1항). 그 경우, 개발 사업의 높은 위험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인가의 심사기준이 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, 타당성 심사가 엄격해질 수 밖에 없게 되고, 그 결과 리츠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더구나, 개발사업은 특성상 개발기간 동안 영업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,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를 전제로 한 리츠는 이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.

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리츠는 공모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영업인가 이전에 설립신고만 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. 프로젝트리츠는 기본적으로 (1) 설립, (2) 설립신고, (3) 부동 산개발사업 시행, (4) 부동산개발사업 사용승인 · 준공검사, (5) 영업인가, (6) 공모의 순서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설계되 었습니다.

설립신고는 영업인가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. 따라서, 프로젝트리츠는 설립신고 후에도 부투법에서 특별히 정한 권리와 의무 이외에는 영업인가를 전제로 한 리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.

이는 프로젝트리츠가 개발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일반적인 리츠에 비해서 가벼운 규제와 감독을 받도록 하되, 투자자의 모집 및 자산의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자 한 취지입니다.

#### 2. 설립신고 제도의 신설

개정안에 의하면, 설립신고를 완료한 프로젝트리츠는 영업인가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투자·운용행위 를 할 수 있고, 현물출자, 차입·사채발행 등도 할 수 있습니다(개정안 제26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5항 및 제6항).

프로젝트리츠는 설립신고를 하려면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고, 자산관리계약, 일반사무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그 밖에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부투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)에서 정하 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(개정안 제26조의4 제1항). 일반적인 리츠가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 는 것과 달리, 프로젝트리츠는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(개정안 제26조 의4제2항).

#### 3. 개발단계에서의 주주 모집에 대한 제한

프로젝트리츠는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에 필요한 투자행위를 할 수 있으나, 투자자 모집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프로젝트리츠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투법 제9조 제4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,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만 신주발행이 허용되는데(개정안 제26조 의4 제5항),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된 바 없으나,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 을 막기 위해 공모를 통한 투자자 모집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# 4. 리츠에 대한 일부 규제의 적용 배제

프로젝트리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(개정안 제26조의4 제7항), 이 보고서는 현행 부투 법 제37조의 투자보고서와는 구별되는바,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,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개 발기간 동안 프로젝트리츠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인 상태이므로 영업인가를 전제로 하는 리츠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

않습니다. 예를 들어, 주식의 공모의무와 분산의무를 적용받지 않고, 일반적인 리츠의 투자보고서 제출의무 및 공시의무 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
#### 5. 프로젝트리츠의 운영단계

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프로젝트리츠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고(개정안 제26조의4 제4항), 영업인 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발행주식의 30%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공모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(개정안 제14조의8 제2항). 프로젝트리츠가 개발사업 준공 후 운영단계로 넘어갈 경우 공모가 가능하게 되고, 이에 따라 일반 투 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바, 일반적인 리츠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영업인가를 받도록 하되, 개발된 자산이 활성화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전에 준공일로부터 2년이던 것을 영업인가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였습 니다.

프로젝트리츠가 일정한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, 공모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개발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개정안은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,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

#### II. 프로젝트리츠의 특징(PFV와의 비교)

프로젝트리츠가 도입될 경우 PFV와 비교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특징(장점)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# 1.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의 안정성

PFV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, 어느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에서 해당 법인을 PFV로 보아 위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.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, 국세청이 조세 특례제한법상 PFV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 다. 또한, PFV의 소득공제에 관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까지 만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입니다. 만약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PFV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소멸하게 됩니다.

반면에, 프로젝트리츠는 부투법에 따른 설립신고 수리절차를 거친 경우이므로,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유효하게 설립신고가 된 이상 설령 부투법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바로 법인세법상 (프로젝트)리츠<sup>`</sup> 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. 또한, 리츠(기업구조조정 리츠 및 위탁관리 리츠)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인 법 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은 한시적 규정이 아니므로,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소멸할 위험이 없습니다.

#### 2. 차입비율 제한에 따른 개발사업의 안정성

PFV는 차입비율 제한이 없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기자본 비율이 2~3%에 불과하여 부도의 위험이 높습니다. 그러나 프로젝트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(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10배)의 범위 내에서만 자금차입 및 사채발 행을 할 수 있으므로(개정안 제26조의4 제6항, 제29조) 개발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#### 3. 준공 후 계속 운영의 선택 가능성

PFV는 원칙적으로 임대업을 할 수 없으므로¹ 개발사업의 준공 후 사업건물을 매각해야 합니다. 그러나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건물을 매각할 수도 있고, 영업인가를 받고 사업건물을 계속 임대·운영할 수도 있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더 넓습니다. 또한, 프로젝트리츠의 기존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리츠의 지분매각(구주매출과 같은 공모행위도 포함됩니다)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

#### 4. 초과배당의 가능성

프로젝트리츠는 PFV와 달리 감가상각비 초과배당이 가능하므로(부투법 제28조 제3항), 운영기간 중 배당에 있어 더 유 리합니다.

#### 5. 분리과세 혜택의 적용

개발기간 동안 공모가 제한되는 프로젝트리츠의 경우 개발사업이 준공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공모를 통해 공모리츠 가 되는데, 공모리츠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 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(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, 동법 시행령 제 102조 제8항 제3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참조). 반면, PFV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

 $<sup>^{1}</sup>$  국세청은 PFV도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건물 매각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, 원칙적으로 임 $_{oldsymbol{4}}$ 대업은 PFV가 영위할 수 있는 '특정사업'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관계로 설령 PFV가 사업 준공 후 사업건물을 임대 · 운영하더라도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받지 못하는바, 지방세 및 종합 부동산세 관련 분리과세 혜택 측면에서도 프로젝트리츠가 PFV에 비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.

개정안이 통과되어 프로젝트리츠가 도입된다면 부동산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선호되는 투자기구나 투자구조에 상당한 변 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에,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그에 후속하여 이루어지는 시행령의 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 습니다.

### 관련 구성원



이준혁 변호사



이석재 변호사



이승환 변호사



강상원 변호사



차혜민 변호사



김민경 변호사



김형준 전문위원